

## 러시아 담보제도 현황

### 1. 개관

- 舊사회주의 체제하의 담보제도는 사적 소유권 제한으로 제한적인 질권만 존재 →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담보제도 정비 필요성
  - 1990년 구소연방 민법에서 본격적으로 담보제도 규정, 1992년 러시아 연방 담보법 제정
  - 1994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민법은 제1장(채무이행의 담보)에서 보증, 은행보증 등 담보에 대해서 규정
    - 민법은 담보권을 대인적 권리로써 채무자로부터의 우선변제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물권이 아닌 채권으로 취급
  - 1992년 제정된 담보법은 민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며, 민법은 채권담보 등에 대해 규정이 불충분 → 1998년 7월 특별법으로서 저당법 제정, 시행
  - 참고로, CIS국가중 카자흐스탄 민법은 러시아 민법을 기초로 하였고, 담보법에도 공통된 부분이 많으며, 아제르바이잔, 투르크메니스탄, 우크라이나, 키르키즈스탄 등에도 담보법이 있는 바, 이들은 러시아의 1992년 담보법과 유사

### 2. 담보제도 주요 내용

#### 가. 담보권의 종류와 목적물

- 담보권은 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,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임
  - 1992년 담보법 주요 내용
    - 담보목적물은 법률에 기초하여 담보권설정자가 처분권을 가지는 모든 재산이며, 기업, 건조물, 시설, 아파트, 운수·교통수단, 우주위성 등임

- 저당권은 이중 기업,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이며, 항공기, 선박 등 운수·교통수단은 담보목적물은 되나 저당권 설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
-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로 동산을 주로 담보목적물로 함
  - 동산 이외의 채권,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으나, 이는 질  
권으로 치그디기 아오 케고세 레친 담보권 설정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
- 유통·가공과정에 있는 상품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, 담보권의 효력은 설정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미치게 됨

#### o 1994년 민법 주요 내용

- 담보목적물을 개별적으로 열거한 1992년 담보법과는 달리, 「유통에서 제외된」 재산 및 일신전속적 권리(日新轉속權)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담보목적물 대상으로 규정
- 「유통에서 제외된」 재산은 대륙붕·경제수역의 자원, 국방관련 재산 등을 말하며, 담보목적물의 대상범위는 기본적으로 1992년 담보법과 별 차이가 없음
- 질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저당권과 그 이외의 담보권으로 구별
- 저당권의 경우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지만 그 이외의 담보권은 채권자가 점유하는 것이 원칙
-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나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시하여야 함
- 저당권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1998년 저당법이 민법에 우선

#### o 저당법 주요 내용

- 저당권 목적물인 「유통되는」 부동산은 토지·동 부착물, 광구, 항공기, 선박, 인공위성, 재산복합체 등을 포함
- 기업활동에 이용되는 건조물, 설비 등도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, 이들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와 함께 또는 임차권을 동시에 설정하여야 함

## 나. 공증 및 국가등기

- 담보권설정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부동산담보계약은 공증을 필하여야 함
  - 공증인은 종래의 국가공증인 외에 사설의 공증인도 인정되고 있음
- 1997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법은 토지, 광구, 토지부착물, 재산복합체로서의 기업도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
  - 항공기, 선박 및 인공위성은 부동산등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동산등기 절차를 원용
  - 향후,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 국가등기부가 작성되어 부동산 소유권, 그 외 물권 및 「제한적 권리」 즉, 지역권, 저당권, 신탁상의 권리, 임차권 등을 등기토록 할 예정
  -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담보권설정의 유효요건이나, 자동차·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권리의 효력요건이 아님
    - 자동차, 건설기계 등에 대한 공시제도도 점차 정비되고 있음
      - 일례로, 국가기술감독국 관할 건설기계, 자동차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담보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식 담보권자는 주주명부에 등록됨
      - 그러나, 부동산과 달리 등기·등록이 유효요건이 아니므로 선순위담보권이 등록(등기)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한 선순위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

## 다. 후순위 담보

- 목적물에 복수의 담보설정이 가능하며, 선순위담보권자의 채권이 변제된 후 후순위담보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됨
  - 후순위 담보의 설정은 선순위담보권자와의 계약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
  - 담보설정자는 후순위담보권자에 대해서 그 재산에 설정된 모든 담보권에 대해서 고지하여야 함

- 고지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나, 그 실효성은 의문시
- 저당법은 후순위저당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
  - o 저당권의 순위는 국가등기부의 순위에 의해 결정되며, 후순위저당의 효력은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계약에서 미리 금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
  - o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의 변제기일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 실행이 가능
- 라. 담보목적물의 양도**
- 저당법은 담보권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앞 양도나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저당증서에 명시적으로 담보물의 양도를 허용하여야 함
  - o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 양도시에는 저당권자는 양도행위 무효를 주장하거나 기한전 담보권 실행이 가능
  - o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인수한 제3자는 그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
- 저당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종래의 저당권자의 지위를 승계함
  - o 저당법은 새로이 저당증서제도를 도입
    - 저당증서는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표상하는 記名유가증권이며, 구체적으로는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권리와 담보권이 표상됨. 다만, 농지,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저당증서가 발행되지 않음. 저당증서는 이서에 의해 이전 가능
- 민법은 담보설정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유상·무상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저당법은 법률·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피담보채무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임대하여 무상이용에 제공하거나,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음. 기간 초과시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

## 마. 담보권 실행

- 1992년의 담보법은 재판절차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집행증서에 의한 실행을 인정함. 민법은 부동산·동산담보의 실행절차를 구별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재판외 실행을 제한함
- 민법은 차압 및 환가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부동산담보(저당)권도 재판에 의한 실행을 원칙으로 정함
  - 집행증서에 의한 실행도 가능하지만, 동 증서가 담보권 설정시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실행의 원인이 발생한 후, 즉 채무불이행 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 바, 이는 선순위담보권자, 담보목적물의 소유자 등 그 합의에 의해 권리가 침해받는 사람의 소송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감안
  - 1997년에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담보권뿐만 아니라 일반채권 집행시에도 집행증서는 부양료채권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음
  - 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확보하는 절차를 정할 수 있음
  - 담보목적물의 환가는 소송법에 따라 법률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, 부동산·동산에 관계없이 경매에 의함. 담보권자는 경매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담보권설정자와 합의를 거쳐 해당목적물을 인수 가능
    - 저당법에서는 경매형태를 집행관이 주재하는 입찰과 경매조직이 행하는 경매의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였으며, 판결에 의하여 환가방법을 지정케 됨
    - 다만, 변제후 담보목적물 확보기회를 채무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채무자의 의견제기로 경매가 1년까지 연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손시킬 수 있음
    - 목적물의 환가액이 피담보채무액에 못미치는 경우 담보권자는 잔액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여타 재산집행에 참여하게 됨
  - 차압에 있어서도 집행증서에 의할 경우 채무불이행 등 저당권실행의 원인이 발생한 후로 한정. 후순위 저당권자가 집행증서 작성시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참여토록 함

## 바. 파산시 변제충당순서

- 1998년 파산법은 담보목적물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켰으나, 변제충당순서를 환경오염 등 개인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,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에 이은 제 3순위로 정함

## 사. 비전형 담보

- 저당권 실행이 재판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, 담보목적물의 환가가 경매에 한하는 등 실행절차에 문제가 많은 점, 그리고 파산시의 담보권의 처리방법 등을 감안하면 계약에 근거한 비전형 담보가 폭넓게 사용될 가능성이 큼
- 비전형담보는 기본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형식을 취하며, 환매특약, 재매매 특약, 신탁계약 등의 형태로 행해짐
  - 상사재판소도 비전형 담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

## 3. 담보제도 시사점

- 재판 이외의 담보권 실행절차 제한, 파산시 담보채권의 우선변제권 훼손 등 러시아 담보제도의 기본 문제점은, 러시아 담보법이 채권자보다는 폭리적 계약으로부터 일반시민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

동경사무소 제공
선임조사역 오 은상(☎02-3779-6644)
E-mail : oes@koreaexim.go.kr